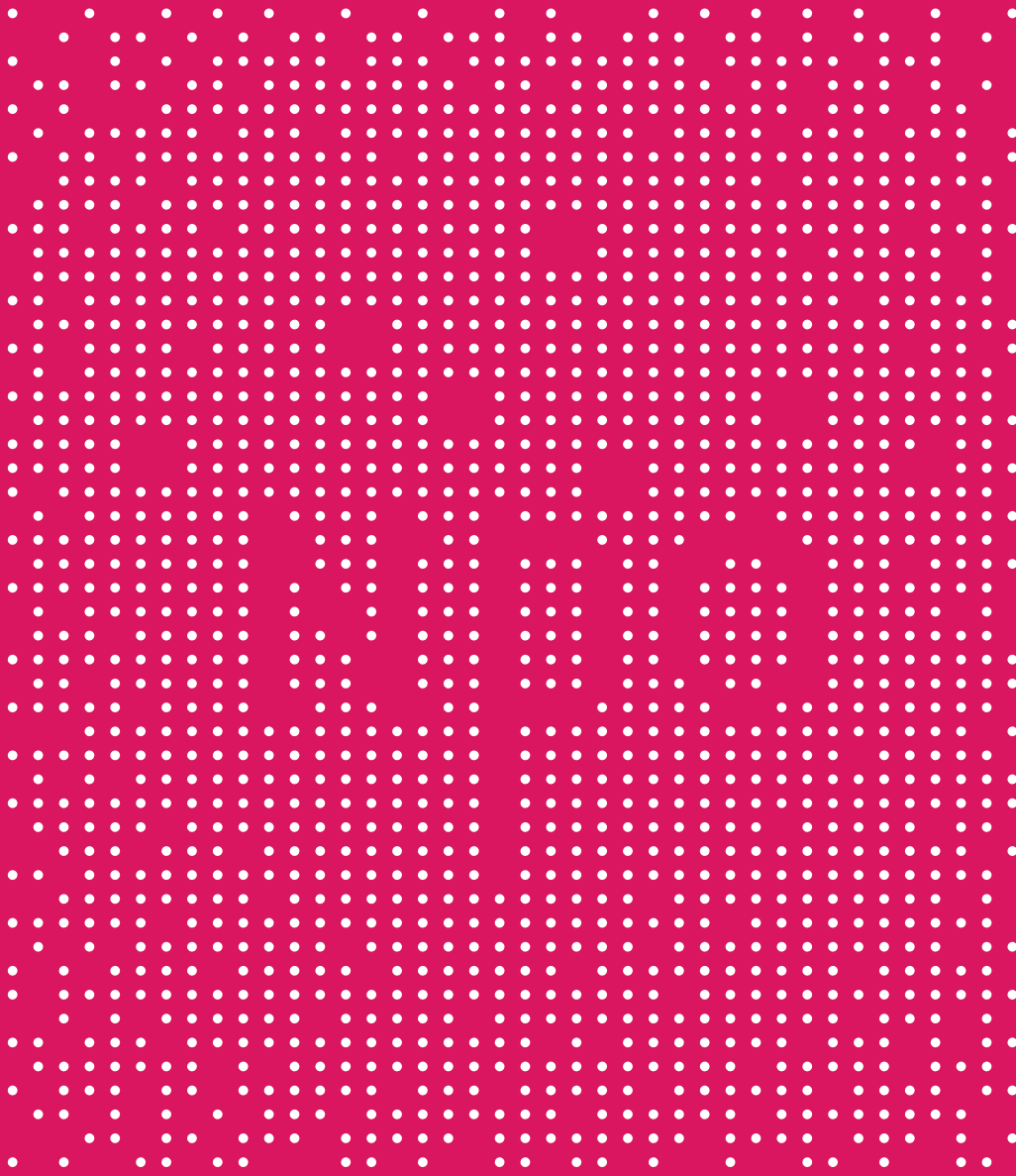


NPO 설립기초안내서
비영리단체 만들기의 첫걸음



본 자료는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제작한
<비영리단체 설립 안내> 웹페이지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NPO설립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웹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비영리단체 설립 안내> 웹페이지로 연결됩니다.



Q1

비영리단체를 만들고 싶다면?

단체를 만들고 싶다면, 우선 단체 설립 이유를 확실히 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 팀이나 동아리 같은 비공식적 모임에서 공식적인 단체로의 전환이 필요하신가요?
-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받으셨나요?
- 적극적 모금을 위해, 후원회원들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자 하시나요?
- 정부의 민간 보조금 사업 참가 자격이나, 재단의 기금을 신청하기 위한 법적 자격이 필요하신가요?

만들고 싶은 목적에 따라 설립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분명한 설립의 목적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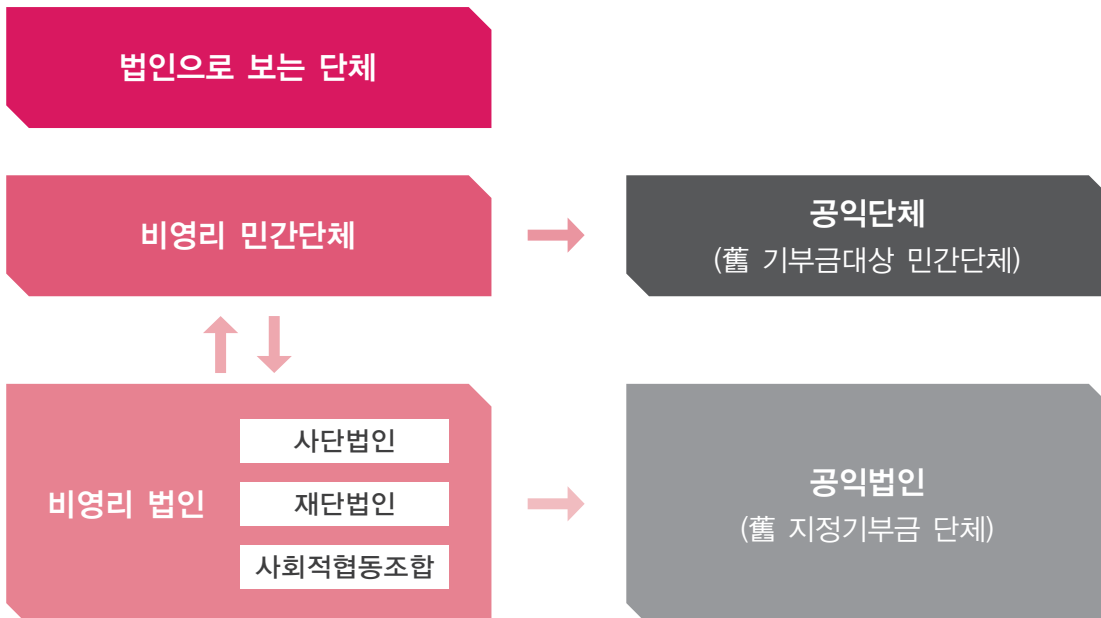


어떤 조직 형태를 선택할지 고민이 될 때 도움이 되는 글



한 눈에 보는 비영리단체 설립 가이드맵

비영리단체 설립, 어떤 형태가 있을까요?



각 조직형태마다 근거 법령이 모두 달라요

구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 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근거법	국세기본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민법 제32조	
성격/정의	임의단체 중 국세기본법에 근거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6개 요건 부합한 민간단체	사람기반 비영리법인	재산기반 비영리법인
등록/허가	관할세무서	영리× 6개 자격요건 100인 이상 1년 이상 활동 실적 중앙행정기관장 혹은 시도지사에게 신청	영리목적× 주무관청 허가	

형태별 비교

구분	임의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근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민법	민법	협동조합기본법
특징	등기하지 않은 조직	비영리만 가능	- 영리·비영리 가능 - 목적을 위해 모인 사람들의 단체	- 비영리만 가능 - 목적을 위해 출연한 재산을 중심으로 한 단체	공익목적사업 비중이 40% 이상
설립 전 조건	-	회원 100명 이상	회원(사원)조직 (인원은 주무부처 마다 상이*)	출연 재산 5~20억 이상	조합원 5명 이상
기부금 영수증 발행	×	개인에게만 가능	개인·기업에게 가능	개인·기업에게 가능	개인·기업에게 가능

*서울의 경우 설립발기인 3명 이상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주무부처에 따라 회원 30~50명 이상을 조건으로 안내하는 경우도 있음



비영리 단체의 형태별 차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보시다!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법인의 차이

구분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근거법령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민법
법인격 부여	×	○
기부금세제혜택 대상	개인	개인, 법인(기업)
비영리성	필수	필수
공익성	필수(핵심)	필수×(이익단체 등)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차이

구분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근거	민법 제32조	민법 제39조, 상법 제169조
목적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경제적 이익
수익사업	제한적으로 허용	허용
수익배분	구성원이나 사원에게 배분 불가	구성원이나 사원에게 배분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

구분	사단법인	재단법인
정의	일정 목적으로 결합한 사람의 단체를 실체로 하는 법인	일정 목적에 바쳐진 재산을 실체로 이루고 있는 법인
최고 의사결정 기구	회원(사원) 총회	이사회(총회 해당 없음)
활동	(자율성) 단체의 의사에 의해 자율적으로 활동	(타율성) 설립자의 의사에 의해 타율적으로 활동



비영리단체 설립 관련 법, 제도 자세히 보기

Q2

설립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근거 국세기본법

이런 단체에 적합하다!

단체 명의로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할 경우

단체 명의의 통장이 필요할 경우

설립과정

- ① 정관 작성
- ② 창립 총회 개최 - 정관 확정, 대표자 및 발기인 확정
- ③ 서류 작성 - '창립 총회 회의록',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서', '대표자 등의 선임신고서' 작성
- ④ 관할 세무서 방문 및 등록 신청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서', '대표자 등의 선임 신고서', '정관', '창립 총회 회의록', '대표자 증빙서류(대표자 신분증, 단체 직인)',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임대차 계약서 등)' 지참
- ⑤ 고유번호증 수령 - 등록 신청 후 1주일 내 결과 안내

단체 설립 후 가능한 일

고유번호증 발급 / 단체 명의의 통장개설

일반 계산서 발급 / CMS 개설

단체 설립 후 할 수 없는 일

수익활동(수익활동 하려면 별도로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증 받아야 함)

세금 계산서 발급 /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필요 서류

(필수 ● | 선택 ●)

설립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

- 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서 | ●
- ②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 | ●
- ③ 정관(규약, 회칙) | ●
- ④ 대표자의 증빙서류 : 대표자 신분증, 단체직인 | ●
* 제3자가 접수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단체직인
- ⑤ 회의록(총회 또는 이사회) | ●
* 창립을 논의한 회의록이면 됨. 회의록에 날인 필요(참가자 3~5인)
- ⑥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용허가서 등
- ⑦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 ●
- ⑧ (휴업, 폐업) 신고서 |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방법 자세히 보기

비영리민간단체

설립근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설립방식

- 중앙행정기관에 등록: 2개 이상 시/도에 1)사무소가 있거나 2)사업을 실행하는 경우
- 시,도 지사에 등록: 사무소가 단일 지역에 소재하거나 한 지역에서 사업을 실행하는 경우

설립요건

-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 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3 정치적, 종교적 목적으로 설립, 운영하지 않을 것
- 4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 5 최근 1년 동안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6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단체 설립 후 가능한 일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 가능

공익단체(舊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신청 가능
→ 개인 회비,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우편요금 감액(25%), 조세혜택 등 간접 지원 받을 수 있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 확인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가?
- 회원에게 배당을 하는 등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는 단체인가?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않는 단체인가?
- 상시 구성원수(회원)가 100인 이상인가? ★ 총회 의결권을 가진 회원 100명을 의미합니다.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가? ★ 연간 꾸준한 공익활동 실적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가?

단체 설립 후 할 수 없는 일

공익단체(舊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법인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불가!!
(개인에게는 발급 가능함)

기부금단체 항목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신청 서류

※ 주무관청별로 제출서류와 서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반드시 주무관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안내 받으세요.

(필수 ● | 선택 ○)

설립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			
이름	필수 여부	비고	
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부 1부	●		
② 단체의 회칙(정관) 1부	●	간인	
③ 당해연도, 전년도 총회 회의록 각 1부	●	간인, 총회 참석명부, 개최 사진 (원본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필요)	
④ 당해연도, 전년도 사업계획, 수지예산서 각1부	●		
⑤ 전년도 결산서 1부	●		
⑥ 회원명부 1부	●	정관 또는 회칙에 따라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회원으로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입일, 전화번호가 작성되어야 하며, 회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0인까지 작성 후 "외 OO인"으로 표기	
⑦ 단체소개서	●	조직 기구표	
⑧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건물 등기부등본 1부	●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에 용도가 '사무실', 회원이 상시적으로 이용 가능한 장소	
⑨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 등	●	단체 명의를 공익활동 실적서로 인터넷 자료, 설명이 기재된 사진 첨부, 언론보도자료, 유인물 등	
⑩ 대표자 인적사항	●		



비영리민간단체 설립방법 자세히 보기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사단법인	재단법인
정의	일정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를 실체로 하는 법인	일정 목적에 바쳐진 재산을 실체로 이루고 있는 법인
최고 의사결정기구	회원(사원) 총회	이사회(총회 해당 없음)
활동	(자율성) 단체의 의사에 의해 자율적으로 활동	(타율성) 설립자의 의사에 의해 타율적으로 활동

(출처 :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사단법인 설립 절차 한 눈에 보기

사단법인 설립준비

- 1 사단법인 목적 및 명칭 정하기
- 2 정관 작성
- 3 창립총회 개최

사단법인 설립허가

- 1 설립대상 사단법인의 주무관청 확인
- 2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
- 3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사단법인 설립등기

- 1 관할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
- 2 등기 후 주무관청에 설립등기 완료 보고

재단법인 설립 절차 한 눈에 보기

재단법인 설립준비

- 1 재단법인 재산 출연
- 2 재단법인 목적 및 명칭 정하기
- 3 정관 작성

재단법인 설립허가

- 1 설립대상 재단법인의 주무관청 확인
- 2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
- 3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재단법인 설립등기

- 1 관할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
- 2 등기 후 주무관청에 설립등기 완료 보고

사단법인 설립 준비

- 법인명, 목적 정하기
(동일명칭 법인이 있는지 확인 필요)
- 발기인 구성
- 정관 작성
- 창립총회 개최, 정관 채택
- 이사장 및 임원 선출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재단법인 설립 준비

- 법인명, 목적 정하기
(동일명칭 법인이 있는지 확인 필요)
 - 설립자 구성과 재산 출연
 - 정관 작성
 - 이사장 및 임원 선출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 * 재단법인의 경우 총회의 구성여부는 설립조건이 아니며, 발기인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주무부서가 발기인 서명이 들어간 창립총회 회의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 재단법인은 통상적으로 이사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 주무관청별로 제출서류와 서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반드시 **주무관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안내 받으세요.

- 법인의 사업목적을 관할하는 주무관청 확인
-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 신청
- 법인의 사업목적을 관할하는 주무관청 확인
-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 신청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허가 신청 시 필요 서류	
사단법인	재단법인
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② 설립발기인 명단, 발기인 인감증명서 각 1부	② 설립발기인 명단
③ 정관	③ 정관
④ 창립총회 회의록	④ 재산목록과 그 입증서류 각 1부
⑤ 임원 취임 예정자 명단 및 취임 승낙서,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임원 인감증명서 각 1부	⑤ 임원 취임 예정자 명단 및 취임 승낙서,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임원 인감증명서 각 1부
⑥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각 1부	⑥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각 1부
⑦ 회원명부	⑦ 사무소 증빙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부동산 사용 승낙서)
⑧ 재산목록, (재산)증명서류, 재산출연 승낙서 각 1부	⑧ 법인 소개서
⑨ 사무소 증빙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부동산 사용 승낙서)	⑨ 법인이 사용할 인장
⑩ 법인 소개서	
⑪ 법인이 사용할 인장	



설립등기 신청

- 설립허가를 받은 후 사단법인의 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법원등기소에 등기 신청
- 허가 후 3주 내 등기해야 함
- 등기 완료 후 비로소 법인으로 성립

등기 시 구비 서류(공통)

❶ 법인 설립등기 신청서	
❷ 정관	
❸ 이사자격증명서	정관 또는 총회 회의록 제출
❹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취임승낙서는 인감으로 날인
❺ 주민등록 등(초)본 - 이사	
❻ 법인 설립허가서	주무관청 발급
❼ 자산총액 증명서	재산목록
❽ 법인 인감신고서	
❾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❿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할 때
⓫ 공증 받은 창립총회(발기인) 의사록	



비영리법인 설립방법 자세히 보기

기부금단체

공익단체 신청 방법 보기 (舊 기부금대상민간단체)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신청대상

- 신청대상: 추천(지정)요건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만 가능
(세무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은 임의단체나 비영리법인인 신청불가)
- 처리절차: 비영리민간단체(신청) → 행정안전부(추천) → 기획재정부(지정)

추천(지정)요건

-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 수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은 제외함)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할 것
-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또는 그 직전 과세기간에 공익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신청방법

- 문서24사이트(open.gdoc.go.kr)에서 전자문서로 신청(방문, 우편, 퀵서비스 신청은 불가)
- 신청서류 연속 스캔 PDF파일로 첨부
- 수신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민간협력과

제출서류

- 1 공익단체(舊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 신청서(서식 1) 1부
- 2 정관
- 3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1부
- 4 고유번호증 1부
- 5 총회를 통과한 예산서 및 결산서 1부
- 6 수입 내역 1부
- 7 단체명의 통장내역 사본
(통장 앞면 및 통장 입출금 내역) 1부
- 8 CMS 자료 제출
통장 입출금 내역에 개인회원(후원) 입금자 이름이 아닌 자 등 이체(CMS)로 표시되는 경우



공익단체(舊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신청방법 자세히 보기



공익법인 신청 방법 보기 (舊 지정기부금단체)

근거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기존 지정기부금)의 세금감면 혜택

요건

- ① 다음 구분에 따라 정관내용이 요건을 충족할 것
 - (민법상 비영리법인 등) 수입의 공익목적 사용 및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일 것
 - * [비영리외국법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 목적 추가됨
 -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 수행
 - (공공기관 /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 수행
- ② 해산시 잔여재산이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될 것
- ③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국민권익위/국세청/주무관청 등의 홈페이지 중 1개 이상의 곳이 법인의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을 것
- ④ 공익법인 등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 ⑤ 지정취소된 경우 지정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

지정절차

- 추천신청: 비영리법인 등은 지정추천 구비서류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관할세무서(법인납세과)로 지정받고자 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지정추천: 관할세무서는 서류구비 및 지정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로 지정추천하며,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심사하여 매분기 말 지정·고시합니다.



분기별 신청기간			
구분	신청기간	추천기한	지정·고시
1분기	전년도10/11 ~ 당해연도 1/10	2/10	3/31
2분기	당해연도1/11 ~ 4/10	5/10	6/30
3분기	당해연도4/11 ~ 7/10	8/10	9/30
4분기	당해연도7/11 ~ 10/10	11/10	12/31

* 신청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분기별 신청기간(출처: 국세청)

* 본 표는 2021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신청기간 및 추천기한 등의 구체적인 일자는 매년 국세청을 통해 확인해야 함

신청 방법

- (홈택스) 홈택스를 통한 전자 접수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
- (방문/우편) 관할세무서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접수 관할세무서 찾기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청 소개 > 전국 세무관서

구비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		
이름	신규/재지정	비고
① 공익법인 등 추천 신청서	신규/재지정	
② 정관	신규/재지정	
③ 법인설립허가서나 조합 설립인가증	신규/재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법인 : 법인설립허가서 • 사회적협동조합 : 조합 설립인가증
④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신규/재지정	(설립 후 1년 미만 법인은 결산서 대신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로 제출 가능)
⑤ 향후 3년(재지정신청의 경우 5년) 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규/재지정	
⑥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신규만	
⑦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 보고서	재지정만	



공익법인(舊 지정기부금단체) 신청방법 자세히 보기

사회적협동조합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안내페이지로 바로가기

함께 보면 좋은 자료들

- ① NPO법률지원매뉴얼
- ② 비영리단체설립을 위한 안내서
_NEW설립신공
- ④ NPO상담소 사례집





이 리플릿은 100% 재생지를 사용하고 콩기름 잉크로 인쇄하였습니다.

발행일 2021.12.23. (SNPO 2021-A-008)
발행처 서울시NPO지원센터
대표번호 02-734-1109
주소 (04523)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9길 39 부림빌딩 1,2층
웹사이트 <http://www.snpo.kr/>
대표메일 contact@snpo.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eoulnpocenter>
블로그 <https://blog.naver.com/snpo2013>